

사업방범서

(단체상해공제)

1. 공제의 종류 : 상해/상해

2. 공제 종목의 명칭 : 단체상해공제

3. 공제의 목적

가. 피공제자의 신체

나.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

다.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

4. 공제기간 및 공제료 납입에 관한 사항

가. 공제기간 :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의 단기계약 또는 1년초과 3년 이하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나. 공제료 납입주기 : 일시납, 2회납, 4회납, 월납, 자유납

5. 공제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
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6. 단체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

가. 가입대상 : 5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단체

나. 공제계약자 :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. 다만, 개별 피공제자가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부담비율만큼 공제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

다. 피공제자의 추가 또는 변경 : 단체구성원의 입사, 퇴직 등의 사유로 피공제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제계약자는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 피공제자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라. 공제료의 수수 :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공제자의 성별, 연령별, 상해급수별로 계산한

공제료를 적용하며, 성별 및 피공제자구분(임직원본인, 배우자, 자녀)에 의해 분류된 피공제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나이를 적용할 수 있다.

가. 공제료의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

- 단체취급계약 할인에 관한 사항 :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공제자별 할인율을 적용한다.

7. 기타

가. 만15세 미만자의 사망을 공제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은 판매할 수 없다.

나. 조합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, 직무 등에 따라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

다. 공제료의 반환 : 관계법규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